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 근거 마련 등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73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 근거 마련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6. 2. 27.

다. 회 부 일: 2026. 3.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6년 4월 9일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치유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

법 제8조에서는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아, 치유관광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치유관광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치유관광사업자가 결격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관광사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범죄경력 조회의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및 제2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②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③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취소를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9조제1항 및 제22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920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u><신설></u>	법률 제20920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u>제8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관광사업 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u> <u>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u>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u> <u>자</u> <u>3.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u>

현행	개정안
	<u>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4. 이 법 또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9조(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사업자가 <u>거짓이나 부정</u> 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	제9조(등록 취소 등) ①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현행	개정안
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② (생략) <신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를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¹⁾는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

1)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①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치유관광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록할 수 있도록 하고, 치유관광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치유관광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①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②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③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취소를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관광사업의 특성상 사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비롯하여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사업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치유관광사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치유관광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을 의무등록이 아닌 임의등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치유관광사업을 영

위하는 경우 동 개정안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관광진흥법」 등 타 입법례의 경우 사업의 등록을 의무규정으로 하면서 동시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의등록제를 규정하면서 결격사유를 규정한 입법례는 찾기 어려움.

[유사 입법례]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결격사유)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또는 한옥체험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참고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의 진흥법임을 감안하여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유관광사업을 임의등록제로 규정하고,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음.

둘째, 안 제8조의2는 법인의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제1항제2호는 치유관광사업자가 등록을 한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임원 또는 영업의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등록 취소를 하도록 하는 경우 법인 전체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과도한 책임을 지우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거나 상속인이营业을 양도하여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²⁾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안 제8조의2제5호 및 제8

2) <유사업법례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제44조(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4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조의2제6호에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안 제8조의2제5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³⁾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건강·웰니스에 관련한 치유관광 산업의 특성상 사전 안전장치가 필요하므로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 규정 신설 등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경찰청은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는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에서 집행되고 있으므로 범죄경력조회 요청대상을 ‘경찰청장’에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7

3)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8조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2019헌바171(병합), 2019헌바17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